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68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개요	1
-------------	---

II. 주요 내용별 검토	4
---------------------	---

1.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2.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 대토보상 및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3
3.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5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33
5.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위한 수도권 부동산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40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46
7.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적용기한 연장	50
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	53
9.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61
10.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66
11.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71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96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5. 14.
- (3) 회 부 일 : 2026. 5. 15.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과세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세의 경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교통·환경친화적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며,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2031년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62조).

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1조의2).

다. 공익사업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7조).

라. 공익사업 용지를 양도하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7조의2).

마.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건물을 2031년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7, 제85조의9).

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31년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8조의9).

사.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35).

아. 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

부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7).

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9조).

차.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과 택시용 부탄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118조).

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이종욱·조인철·이해민·엄태영·윤준병 의원안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법 제71조의2) ○ 특례내용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 특례적용 요건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소재 주택 1채 신규 취득 ○ 취득기한 － 2024. 1. 4. ~ <u>2026. 12. 31.</u>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71조의2) ○ 특례내용 (현행과 같음) ○ 특례적용 요건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연장 ○ (이종욱의원안) 2029.12.31. ○ (조인철의원안) 2031.12.31. ○ (이해민의원안) 2029.12.31. * 양도소득세 취득기한만 연장,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 기한은 2026.12.31. 유지 ○ (엄태영의원안) 2030.12.31. ○ (윤준병의원안) 2031.12.31.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이종욱의원안 2026. 4. 9. 발의(의안번호 18207), 조인철의원안 2026. 4. 28. 발의(의안번호 18657), 이해민의원안 2026. 5. 6. 발의(의안번호 18806), 엄태영의원안 2026. 5. 6. 발의(의안번호 18808),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¹⁾는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

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²⁾ 및 종합부동산세³⁾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참고로, 동 과세특례는 당초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었으나, 지방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⁴⁾.

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분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 4)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편, 과세특례 요건은 ① 지역 요건 및 ② 취득가액 요건으로 구분⁵⁾되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각각 지역 요건과 취득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구분	지역 요건 [아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취득가액 요건
인구감소지역	①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② 광역시(군 제외) ③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	비수도권: 9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⁶⁾
인구감소관심지역	① 수도권 ② 광역시(군 제외) ③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	4억원 이하

□ 참고로, 인구감소지역⁷⁾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2)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접경지역의 주택은 취득가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으로서 전국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인구감소관심지역⁸⁾은 장래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전국 1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광역시(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광역시(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2)	가평군,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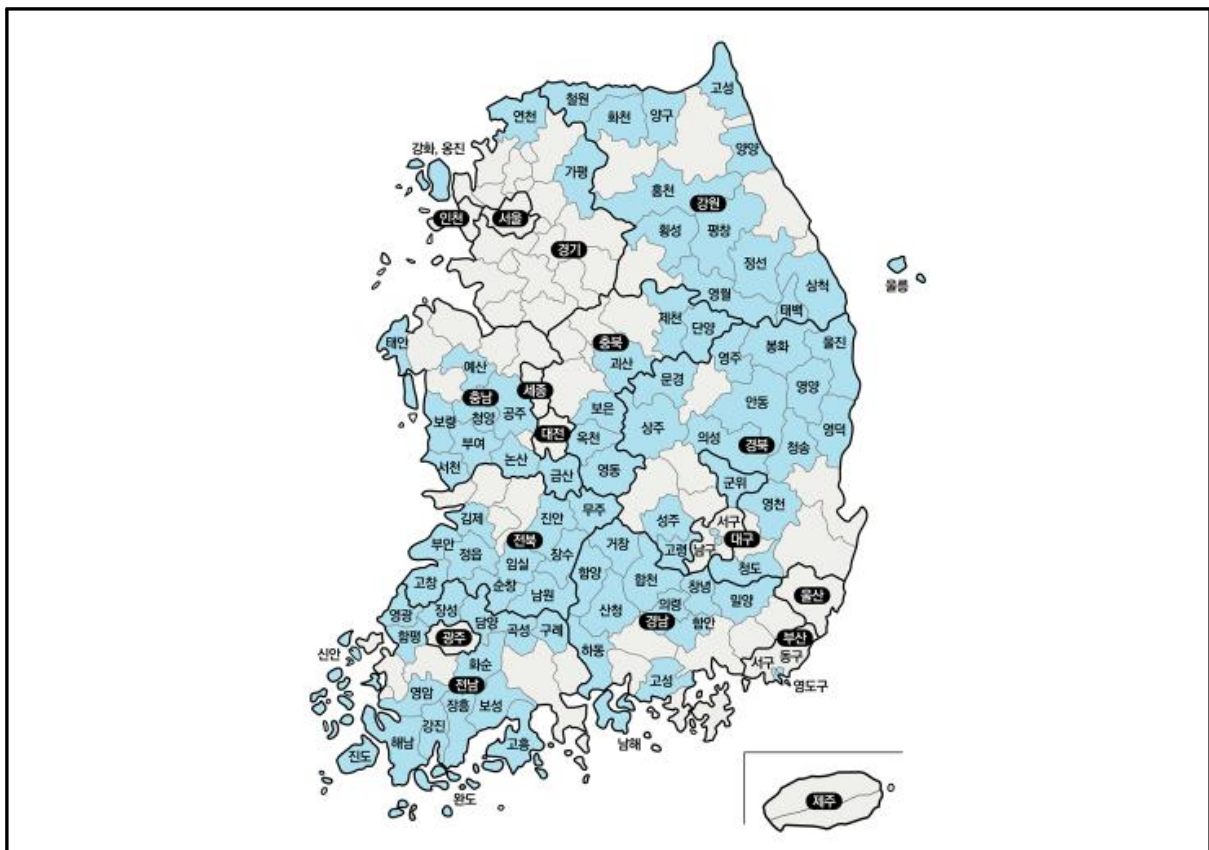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부산광역시(2)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1)	동구
광주광역시(1)	동구
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2)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특별자치도(1)	익산시
경상북도(2)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2)	사천시, 통영시

자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 각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등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해민의원안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한정하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이종욱의원안·조인철의원안·엄태영의원안·윤준병의원안은 각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전체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함.

[각 개정안 비교]

구분	주요 연장 내용	일몰 기한
이종욱의원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2029.12.31.
조인철의원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2031.12.31
이해민의원안	양도소득세	2029.12.31
엄태영의원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2030.12.31.
윤준병의원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2031.12.31

□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등으로의 생활인구⁹⁾ 유입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2025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2,608만 1,644명)는 2024년 보다 3만 4,121명(+0.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2,503만 5,734명) 13만 3,964명(△0.53%) 감소하여, 그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9)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월 1회 이상 방문자’ 모두를 말함.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104만 5,910명)로 확대된 상황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2017년~2025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도권 (A)	2,568만 (49.60)	2,580만 (49.78)	2,593만 (50.00)	2,604만 (50.24)	2,602만 (50.39)	2,599만 (50.52)	2,601만 (50.69)	2,605만 (50.86)	2,608만 (51.01)
비수도권 (B)	2,610만 (50.40)	2,603만 (50.22)	2,592만 (50.00)	2,579만 (49.76)	2,562만 (49.61)	2,545만 (49.48)	2,531만 (49.31)	2,517만 (49.14)	2,504만 (48.99)
격 차 (A-B)	△41.9만	△231만	0.2만	24.8만	40.8만	53.1만	70.3만	87.8만	104.6만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외 14곳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6.1. 5.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유입된 인구들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인구감소지역 등의 근본적 문제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 없이 세제 혜택을 통해 수도권 등의 도시 인구 유입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등의 부동산 경기를 일시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세컨드홈은

정주(定住)가 아닌 체류·생활인구 유입에 그쳐 근본적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세컨드홈 특례(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다수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거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¹⁰⁾, 동 특례 도입 이후 인구감소지역등의 생활인구 증감·주택 거래량·세수효과¹¹⁾ 등 정량적 성과를 점검하여 과세특례 일몰 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동 과세특례의 수혜 구조 및 조세형평성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 특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책목적 대비 지원대상의 적정성(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을 위하여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취득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조세형평성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해민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한정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현행 일몰기한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조선일보, 지방 살린다는 '세컨드홈' 효과 없었다, 2025.9.22.

제도 시행(2024년 1월) 이후 2025년 7월까지 월평균 주택 거래량이 직전 5년(2019년~2023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5곳 뿐이고, 다른 지역은 거래량이 감소

11) 한편,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추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등의 주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동일한 정책 목적 아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세목 간 적용기한을 달리 운영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 인구감소지역등의 주택 취득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양 세목에 대한 적용기한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5건의 개정안은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을 각각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데(2029년 12월 31일(이종욱의원안, 3년), 2031년 12월 31일(조인철의원안, 5년), 2029년 12월 31일(이해민의원안, 3년), 2030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4년), 2031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5년)),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과 관련하여,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문 의 처
02)6788-5150

12)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 대토보상 및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윤준병의원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양도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소득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감면율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감면율</th></tr> <tr> <td>현금보상</td><td>15%</td></tr> <tr> <td>일반채권보상</td><td>20%</td></tr> <tr> <td>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35%</td></tr> <tr> <td>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45%</td></tr> </table> ○ 만기보유채권 만기보유 불이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정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추정율</th></tr> <tr> <td>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15%</td></tr> <tr> <td>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25%</td></tr> </table> - 추정시 이자상당액 징수 등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양도 시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7조의2)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이연 대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구 분	감면율	현금보상	15%	일반채권보상	20%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35%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45%	구 분	추정율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15%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25%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77조) ○ 적용기한 - <u>2031년 12월 31일까지</u> 양도 시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77조의2)
구 분	감면율																
현금보상	15%																
일반채권보상	20%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35%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45%																
구 분	추정율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15%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25%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일 전에 양도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시 양도대금인 대토보상 ○ 양도소득세 감면율 또는 과세이연 - 양도소득세액의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감면·과세이연한 양도소득세의 추정 -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등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등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 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7·제85조의 9) ○ 지원 대상 -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및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방침에 따라 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 특례 내용 - 내국법인: 양도차익을 5년(물류 3년) 거치 후 5년(물류 3년)간 분할 익금산입 -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5년(물류 3년) 거치 후 5년(물류 3년)간 분할납부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 적용기한 - <u>2031년 12월 31일까지</u>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 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 85조의7·제85조의9) ○ 적용기한 - <u>2031년 12월 31일까지</u>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공익사업 관련 주요 세제지원 조항(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代土)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들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연장 내용	근거 법령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77조
	특례 내용	· 현금보상 15%, 일반채권 20%, 3년 만기보유 채권 35%, 5년 만기보유 채권 45%	
대토(代土)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지원 대상	· 공익사업 시행으로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현금 대신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거주자	제77조의2
	특례 내용	· 양도소득세액의 40% 감면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 선택 적용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대상	·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및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방침에 따라 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특례 내용	· 내국법인: 양도차익을 5년(물류 3년) 거치 후 5년(물류 3년)간 분할 익금산입 ·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5년(물류 3년) 거치 후 5년(물류 3년)간 분할납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¹³⁾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

1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

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보상방법에 따라 현금보상은 15%, 채권보상은 20%,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한 채권보상은 최대 45%까지 감면하고 있음¹⁴⁾.

다만, 만기보유채권의 경우에는 만기보유 불이행 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5%(3년 이상 만기) 혹은 25%(5년 이상 만기)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고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감면율은 부동산 경기, 실거래가 과세 도입, 비과세·감면 정비 정책 및 공익사업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음.

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을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7항을 준용한다.

14)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임.

동 조세특례는 1976년부터 시행되어 1989년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액 면제하였으나, 1990년 현금보상 및 채권보상에 대해 차등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0년대에는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음.

2002년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현금보상분에 대한 감면이 폐지되고 채권 보상분에 대하여 10%만 감면하도록 하였고, 2007년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 전환으로 인해 현금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되고 채권보상분에 대한 감면율이 인상되었으며,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감면율을 인상하였음.

2014년 이후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이유로 감면율을 인하하였고, 2016년 이후 현금보상에 대해 10%, 채권보상에 대해 15%, 3년 만기채권 보유 시 30%, 5년 만기채권 보유 시 4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며,

2025년 3월 각 보상방식에 대한 감면율을 5%p 인상함.

동 조세특례는 현금보상보다 채권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임.

[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변경 연혁]

	1989 이전	1990~ 1993	1994~ 1998	1999~ 2001	200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2015	2016 ~2024	2015 ~
현금 보상분	100 %	50%	30%	25%	-	10%	20%	20%	15%	10%	15%
채권 보상분	100 %	80%	40%	35%	10%	15%	25%	25%	20%	15%	20%
채권 만기 보유	-	-	-	-	-	20%	30%	40% (3년) 50% (5년)	30% (3년) 40% (5년)	30% (3년) 40% (5년)	35% (3년) 45% (5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예정신고 기준 감면건수는 5만 9,364건, 감면액은 1,285억 1,000만원이고, 확정신고 기준 감면건수는 3,907건 감면액은 31억 3,400만원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2018년	65,388	128,877	5,460	5,665
2019년	72,031	146,538	5,717	4,196
2020년	104,448	373,264	7,080	15,012
2021년	106,766	326,062	6,860	11,162
2022년	79,480	248,384	5,644	6,798
2023년	69,110	180,122	4,476	4,624
2024년	59,364	128,510	3,907	3,134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¹⁵⁾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대토보상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액 40%를 감면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고 있음¹⁶⁾.

다만,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대토보상권을 부동산전문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

대토보상은 현금보상 대신 개발된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일시적인 보상 재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

1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 16) 참고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는 2007년 말 처음 도입 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만 가능하였으나, 2014년 말 세법 개정 시에 ‘양도소득세액의 20% 감면 혹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2015년 말 세법 개정 시 ‘양도소득세액의 15%의 감면 혹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19년 말 세법 개정 시 감면율을 40%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규정을 상향입법하였음.

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변경 연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율	불가	불가	불가	20%	15%	15%	40%
일몰기한	2009.12.31.	2012.12.31.	2015.12.31.	2015.12.31.	2018.12.31.	2021.12.31.	2026.12.31.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42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고, 2024년 기준 과세이연을 받은 건수는 예정신고 기준 24건, 확정신고 기준 1건임.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234억원	181억원	142억원	120억원	131억원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공익사업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현황]

연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예정신고 건수	확정신고 건수
2016년	122건	12건
2017년	69건	14건
2018년	75건	6건
2019년	76건	1건
2020년	210건	3건
2021년	546건	10건
2022년	774건	46건
2023년	243건	7건
2024년	24건	1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또는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¹⁷⁾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내국법인은 분할 익금산입,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¹⁸⁾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

1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 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내국법인은 분할 익금산입,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기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 부담으로 인해 이전이 지연되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0.2억원,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0.02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함.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공장 이전	0.4억원	0.3억원	0.2억원	0.2억원	0.2억원
물류시설 이전	0.02억원	0.02억원	0.01억원	0.01억원	0.01억원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당하거나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 부담을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완화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첫째, 공익사업용 토지등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 취득 또는 강제수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음. 즉, 비자발적 재산권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수용자의 재산권 침해를 세제 혜택을 통해 일부 금전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기업의 불가피한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연속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둘째,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불성립 이후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비용·소송비용이 발생하고¹⁹⁾, 해당 공익사업의 지연 시 공익사업의 사업성과 시의성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보상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피수용자 및 이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

19) 공익사업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게 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으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 및 사업장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⁰⁾.

문 의 처
02)6788-5150

20)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3.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윤준병의원안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안 제98조의9) ☐ 준공후미분양주택 요건 - 2024. 1. 10.부터 <u>2026. 12. 31.</u> 까지 기간 중에 취득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 하더라도 기존 1주택 양도 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박대출·최은석·정태호 의원안·정부안) - 1세대가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 공제	☐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98조의9) ☐ 준공후미분양주택 요건 - 2024. 1. 10.부터 <u>2031. 12. 31.</u> 까지 기간 중에 취득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²¹⁾는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비

2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과세특례 요건은 ① 준공후미분양주택 중 ② 지역 요건 및 ③ 전용면적·취득가액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함.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구분	요건
지역 요건	① 수도권 밖의 지역
기타 요건	①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② 취득가액 : 7억원 이하 ③ 양도자: 분양사업자, 시공사 등 ④ 양수자 :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 참고로, 동 특례는 2024년에 도입되었으나 준공후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준공후미분양 물량은 28,641호로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임. 특히, 비수도권 준공후미분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① 법 제98조의9제1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3.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사
 4.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일 것

양 물량은 24,398호로 전체 준공후미분양 물량 중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

[주택 미분양 현황]

(단위: 호)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56,431	57,330	58,838	47,797	19,005	17,710	68,107	62,489	70,173	66,510
- 준공후	10,011	11,720	16,738	18,065	12,006	7,449	7,518	10,857	21,480	28,641
민간부문	56,431	57,330	58,838	47,797	19,005	17,710	68,107	62,489	70,173	66,510
공공부문	0	0	0	0	0	0	0	0	0	0
수도권	16,689	10,387	6,319	6,202	2,131	1,509	11,035	10,031	16,997	15,883

자료: 지표누리 e-나라지표

[2025년 지역별 준공후미분양 현황]

(단위: 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673	2,593	3,010	1,290	781	475	832	2,280	1,347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370	2,055	42	1,546	1,824	3,286	3,207	2,030	28,641

자료: 지표누리 e-나라지표

□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심리를 촉진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2025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2,608만 1,644명)는 2024년보다 3만 4,121명(+0.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2,503만 5,734명) 13

만 3,964명(△0.53%) 감소하여, 그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104만 5,910명)로 확대된 상황으로, 지방의 인구감소는 주택수요 감소와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준공후 미분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2017년~2025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도권 (A)	2,568만 (49.60)	2,580만 (49.78)	2,593만 (50.00)	2,604만 (50.24)	2,602만 (50.39)	2,599만 (50.52)	2,601만 (50.69)	2,605만 (50.86)	2,608만 (51.01)
비수도권 (B)	2,610만 (50.40)	2,603만 (50.22)	2,592만 (50.00)	2,579만 (49.76)	2,562만 (49.61)	2,545만 (49.48)	2,531만 (49.31)	2,517만 (49.14)	2,504만 (48.99)
격 차 (A-B)	△41.9만	△23.1만	0.2만	24.8만	40.8만	53.1만	70.3만	87.8만	104.6만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외 14곳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6.1. 5.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비수도권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지방 미분양 장기화는 중소 건설사의 자금회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 건설업 연체율 또한 상승하는 추세임. 2025년 기준 중소기업 건설업 연체율은 1.71%, 중소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0.8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감안

할 때,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 문제가 금융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자본시장 내 여유자금이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준공후미분양 물량 해소를 통하여 지방 건설사의 자금 회수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건설업 연체율]

(단위: %)

연도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6년 말	1.03	0.46
2017년 말	0.46	0.27
2018년 말	0.46	0.33
2019년 말	0.41	0.24
2020년 말	0.28	0.09
2021년 말	0.29	0.03
2022년 말	0.40	0.16
2023년 말	1.14	0.25
2024년 말	1.22	0.34
2025년 말	1.71	0.87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중소기업 건설업 연체율)

* 자료: IBK 기업은행 팩트북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과거 주택시장 침체기마다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반복적으로 도입한 바 있음. 이러한 지속적인 세제 혜택은 건설사 및 부동산 PF에 ‘미분양 시 정부의 지원’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게 하여 시장의 자구노력을 저해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준공후미분양주택이 집중된 지역은 구조적인 수요 부족과 인구 감소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단편적인 세제지원만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거주자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현황]

구분	감면 대상		해당 기간	감 면
제98조	전 국	미분양 국민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	1995.11.1.~ 1997.12.31. 1998.3.1.~ 1998.12.31.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혹은 종합소득세 적용 중 선택
제98조 의2	수 도 권 밖	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	2008.11.3.~ 2010.12.31.	기본세율 및 완화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양도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제98조 의3	서 울 이 외	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양도	2009.2.12.~ 2010.2.11.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60%)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¹⁾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60%)
				공통: 기본세율 및 완화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제98조 의5	수 도 권 밖	2010.2.11. 기준 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양도	2010.5.14.~ 2011.4.30.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분양가격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등 감면 ²⁾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분양가격인하율에 따른 감면율 ²⁾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제외
				공통: 기본세율 및 완화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제98조 의6	전 국	2011.3.29. 기준 준공후미분양주택 중 해당기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양도 (①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②주택을 5년 이상	2011.3.29.~ 2011.12.31.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50% 감면 (①의 경우만 해당)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제외
				공통: 기본세율 및 완화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구분	감면 대상		해당 기간	감 면
		임대한 경우만 적용)		
제98조 의7	전 국	2012.9.24. 기준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양도	2012.9.24. ~ 2012.12.31.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
				공통: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제98조 의8	전 국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35㎡ 이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2015.1.1. ~ 2015.12.31.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1)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2) 분양가격인하율이 0~10%인 경우 감면율 60%, 분양가격인하율이 10~20%인 경우 감면율 80%, 분양가격인하율이 20% 초과하는 경우 감면율 100%
자료: 현행법 조문 재구성

□ 둘째, 최근 준공후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에 따른 과세특례가 실제로 준공후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요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서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할 유인이 충분한지 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특히, 준공후미분양주택은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만으로 신규 수요를 유도하기에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 주택시장 회복과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지방의 준공후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0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 ☐ 세액공제 요건 -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 세액공제 대상 -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1. 12. 31.</u> ☐ 시행일: 2027. 1. 1.

*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개정안은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에 따른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과세특례로서,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²²⁾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²³⁾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 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 상금,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²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024년 규모는 23조 8,515억 원으로 2023년 22조 9,642억 원 대비 3.9% 증가했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확대로 게임시장이 2020년에 21.3%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성장률 자체는 둔화 추세이기는 하나 지속 성장하고 있음.

-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2015~2024년)]



국내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3% 증가한 85억 346만 6,000달러(한화 11조 5,985억 5,700만 원, 한국은행 2024년 연평균 매매 기준율 1,363.98원 적용)로 집계되었음.

[국내 게임 산업의 수출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액	8,193,562	8,672,865	8,981,751	8,394,003	8,503,466
증감률	23.1	5.8	3.6	△6.5	1.3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전체 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11.8% 상승한 2,895.4억 원이었음.

전체 산업규모 중 게임단 예산이 1,4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미디어업 매출은 922.9억 원으로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포츠 산업규모 세부 현황(2023~2024년)]

(단위: 억원,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산업규모	2,569.5	2895.4	11.8
상금규모	190.1	183.1	-3.7
게임단 예산	1,115.5	1,426.1	27.8
미디어업 매출	959.2	922.9	-3.8
종목사 매출	186.0	234.1	25.9
데이터 플랫폼 매출	118.7	105.9	-10.8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4년 이스포츠 대회 수는 전년 대비 9개가 증가한 225개로 나타났다
고, 상금 규모는 183.1억 원으로 2023년 190.1억 원 대비 3.7% 감소
하였다.²⁵⁾

[이스포츠 대회 및 상금 규모(2023년·2024년)]

(단위: 개, 억원, %)

대회 수			상금 규모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3년	2024년	증감률
216	225	4.2	190.1	183.1	△3.7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편, 이스포츠의 근거 법률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국가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5) 조사 대상은 1) 글로벌 종목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 대회 또는 2) 우리나라 소속 이스포츠 주체가 개최하는 대회로, ‘우리나라의 자본으로 개최되는 국내외의 모든 대회’임

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²⁶⁾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²⁷⁾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스포츠 대회를 활성화하고 이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스포츠 종목사의 매출은 중계권, 스폰서십/광고, 티켓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2025년 종목사 예상 매출은 231.7억원으로 2024년

26) 종목선정 기관은 한국e스포츠협회로 지정되어 있음.

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매출 234.1억원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음.²⁸⁾

이와 같이 이스포츠 종목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종료되면 비용 부담증가로 이스포츠대회 운영이 축소될 여지가 있음.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면 이스포츠대회 개최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체적인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의 질적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둘째,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이스포츠대회 개최를 촉진하고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동 조세특례는 비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포츠 대회의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이스포츠 민간경기장은 9곳인데 모두 수도권에 있으며, 정부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비수도권의 지역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은 4곳임.

또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전문이스포츠대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이스포츠대회 운영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위주로 전문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임.

28) 해당 조사에는 5개의 종목사가 참여하였음

2024년에는 총 25개의 대회 중 64%에 해당하는 16개 대회가 수도권에서 개최되었고, 2025년에는 총 22개의 대회 중 68%에 해당하는 15개의 대회가 수도권에서 개최되었음.

[지역별 전문이스포츠대회 개최 건수 현황]

(단위: 개)

2024년				2025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16 (64%)	8 (32%)	1 (4%)	25 (100%)	15 (68%)	7 (32%)	22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 대회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스포츠 대회 개최가 늘어나면서 비수도권의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인데,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조세특례는 2025년 초에 최초로 시행될 때 적용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었음.²⁹⁾

29)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소관부처 성과평가 및 제도 필요성·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5.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위한 수도권 부동산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21조의34) ○ 대상 -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 ○ 요건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양도 ○ 특례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요건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u>2031년 12월 31일까지</u> 양도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위한 수도권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규로 취득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2023년 6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내용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 중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개인·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음³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서 시·도지사의 신청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¹⁾.

이러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따라 동법 제정 이후 기

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희발전특구에 관한 각종 세제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다수의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기회발전특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음.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제도]

세 목	주 요 내 용
소득·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재산세	○ 수도권에서 특구(비수도권)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감면 -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이자·배당소득세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 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인센티브는 “●”로 표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 11.

한편, 산업통상부는 2024년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한 이후, 울산·세

충·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도 같은 해 11월 지정·고시하였으며,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의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기회발전특구 지정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5. 7.

□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제도 중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기회발전특구 내 신규 사업용 부동산 처분시까지 이연할 수 있게 해주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 55.4%(사업체 수 기준), 64.7%(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3년 총 2,648개 상장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1,073개로 전체의 약 41%,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73%의 상장사가 집중되어 있음.³²⁾ 또한, 2023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82곳 가운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50곳, 수도권 전체로는 58곳이 위치하는 등³³⁾ 여전히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동 과세특례를 연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외에도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기

32) 통계청, 'KOSIS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KIND 기업공시채널.

33)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업 이전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지원 및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재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 창업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개발부담금 감면, 기업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둘째, 동 과세특례는 시행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동 과세특례는 2024년부터 시행되어 실적이 집계되었는데,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이 없으며, 재정경제부는 2025년과 2026년에도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³⁴⁾

문 의 처
02)6788-5155

34) 재정경제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년 9월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제62조) ○ 대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 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이전지역: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 특례: 종전부동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이전지역: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1. 12. 31.</u> ○ 시행일: 2027. 1. 1.

*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개정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5년간 균분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³⁵⁾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

□ 현행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함.

동 특례는 국가 정책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초기인 2012년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4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6년 말 일몰 예정임.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목표로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2026년 4월 기준 149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음.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공공기관 이전 현황]

(단위: 개)

구 분	소속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혁신도시	31	14	32	29	3
세종시	-	-	2	16	1
개별이전	12	3	2	4	-
합 계	43	17	36	49	4

주: 2026. 4. 30.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한편, 대규모 부동산은 매수자의 범위가 넓지 않고, 매각 입찰 유찰 시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등 매각전략 이행에 상당기간이 필요하여 전체 매각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재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부동산 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음.

2026년 4월 기준 매각되지 않은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4개 소로 매각예정액은 약 8,431억원임.

[종전부동산 매각대상 현황(이전 완료)]

(단위: m², 백만원)

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면적		매각예정액
			부지	건축물	
중앙119구조본부	남양주	대구	9,079	-	9,079
한국광해관리공단	종로	강원	3,464	20,856	171,600
한국교육개발원	서초	충북	60,037	12,353	82,250
한국토지주택공사(오리)	성남	경남	37,997	72,011	580,128
합 계					843,057

주: 2026. 4. 30.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또한, 기상청의 경우 현재 이전이 진행중으로, 매각 예정액은 약 903억원임.

[중전부동산 매각대상 현황(이전 중)]

(단위: m², 백만원)

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면적		매각예정액
			부지	건축물	
기상청	서울	대전	18,232	20,509	90,329
합 계					90,329

주: 2026. 4. 30.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개정안은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중전부동산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7.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관세의 경감(§118) ○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 50% 감면 - 적용기한: <u>2026년 12월 31일까지</u>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5년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1년 12월 31일까지</u> ○ 시행일: 2027. 1. 1.

*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³⁶⁾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50%)하고 있으며, 동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36)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동 조세특례에 따른 관세감면 실적은 2022년 4억원, 2023년 1억원, 2024년 0.3억원임³⁷⁾.

-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감면 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에 소요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장비는 해외 선도국 대비 기술력, 시장 규모 등의 차이로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내 생산이 곤란한 제품에 한해 관세를 감면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와 더불어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이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37)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문 의 처
02)6788-5158

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106조의7) ○ 적용대상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경감률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 90%p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 5%p는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사용, 4%p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으로 사용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9년 12월 31일</u> (박용갑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박용갑의원안 2026. 3. 12. 발의(의안번호 17431),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2건의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종사자의 수입을 개선하려는 것임.

○ 박용갑의원안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윤준병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

려는 것임.

- 동 제도는 1995년 일반택시 운영의 어려움과 택시기사(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고려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도입된 것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경감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마련되었음.

이후 경감률은 90%(2009년 시행), 95%(2015년 시행), 99%(2018년 시행)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 또한 계속 연장되어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현재 총 경감세액 99% 중 90%p는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5%p는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 기관³⁸⁾에, 4%p는 운수종사자 복지를 위한 복지재단³⁹⁾에 지급되고 있음.

이 중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은 경감세액 등을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조세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로, 2024년에는 2,219억원이었으며 2025년은 2,248억원, 2026년은 2,319억원으로 전망됨.

38)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2015년 설립)

39)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2018년 설립)

- 지2024년 총 경감세액 2,219억원 중 2,017억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었으며, 112억원은 택시감차보상재원으로, 90억원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으로 지출되었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세지출 추이]

(단위: 억원)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부가가치세	1,877	2,012	2,022	1,786	1,835	2,067	2,219	2,248	2,319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다른 운수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고 근로여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적용기한 연장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2020년~2024년 법인 형태의 운수업 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액은 3,760만원~4,230만원 수준인 데 반해, 법인가업 택시 운수종사자의 평균 급여액은 1,700만원~2,020만원 수준으로 전체 법인 운수종사자 평균 급여액의 45~49%에 불과함.

[법인 운수종사자의 평균 급여액 현황]

산업별		운수업 전체			택시 운수업		
조직형태별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법인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법인
2020	종사자수 (명)	662,735	76,927	739,662	94,723	337	95,060
	급여액 (백만원)	23,145,174	4,694,354	27,839,528	1,614,355	4,950	1,619,305
	평균급여액 (백만원)	34.9	61.0	37.6	17.0	14.7	17.0
2021	종사자수 (명)	742,268	72,016	814,284	82,703	1,455	84,158
	급여액 (백만원)	26,761,990	4,583,649	31,345,639	1,552,242	31,752	1,583,994
	평균급여액 (백만원)	36.1	63.6	38.5	18.8	21.8	18.8
2022	종사자수 (명)	725,685	75,225	800,910	72,816	972	73,788
	급여액 (백만원)	27,860,241	4,663,239	32,523,480	1,290,267	16,470	1,306,737
	평균급여액 (백만원)	38.4	62.0	40.6	17.7	16.9	17.7
2023	종사자수 (명)	748,477	79,240	827,717	75,049	3,143	78,192
	급여액 (백만원)	31,501,516	4,667,762	36,169,278	1,542,466	66,102	1,608,568
	평균급여액 (백만원)	42.1	58.9	43.7	20.6	21.0	20.6
2024	종사자수 (명)	832,471	78,498	910,969	77,737	3,279	81,016
	급여액 (백만원)	33,773,125	4,789,997	38,563,122	1,575,702	56,857	1,632,559
	평균급여액 (백만원)	40.6	61.0	42.3	20.3	17.3	20.2

주: 1. 법인은 회사법인과 회사이외법인의 합계임.

2. 평균급여액은 급여액을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운수업 조사」(2020~2024년)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의 90%p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⁴⁰⁾

또한, 복지기금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2025년 간 총 34,440명에게 377억원(1인당 약 110만원) 규모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사업을 현행과 같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납부세액 경감을 통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 복지사업 추진실적(2019~2025년)]

복지사업							기타
구분	정밀 건강검진	자녀 학자금지원	중증질환 치료비지원	생계지원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	계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생계지원
지원인원	18,956명	13,241명	1,219명	76명	908명	34,400명	95,458명
지원규모	87억원	255억원	28억원	2.1억원	4.9억원	377억원	6억원
1인당 지원	30~50만원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20~60만원	110만원	

자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둘째, 택시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장 환경이 장기간

40) (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73,225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20만원/월 지급되었음.

왜곡된 점을 고려할 경우 택시회사의 경영여건 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교통이용자의 편의 유지를 위해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2023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전철·지하철의 확장과 승용차 보급 확대로 택시의 여객수송분담률이 2018년 12.3%, 2023년 7.7%에 불과하는 등 택시운송서비스 시장이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면허대수는 2018년 말 252,254대(일반 87,525대, 개인 164,729대)에서 2023년 말 247,937대(일반 83,355대, 개인 164,582대)로 1.7% 감소⁴¹⁾하였을 정도로 과잉공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반면, 택시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준과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각 시·도에서 택시요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각 시·도에서 운임·요율을 조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3년 2월 1일 개편된 요금체계를 2026년 6월 현재까지 유지 중임.

이는 택시요금이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요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윤 확보라는 경영의 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급여수준을 지

41) 2026년 5월말 기준 전국택시 면허대수 246,368대(일반 81,659대, 개인 164,709대)

급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역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감소에 따른 택시대수 감소, 또는 이윤 확보를 위한 요금제 인상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서민들의 원활한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서도 동 감면제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2023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정부개입이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정책수단과 제도운영의 적절성이 낮고 타 제도와의 중복성이 있으며 감차와 복지사업에 관한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심층평가에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금지급은 직접 재정지출로 대체할 수 있는 반면 운송사업자에게 행정·민원 등 행정비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금지급과 복지사업은 기존 정부의 저임금 근로자 지원정책 및 국가장학금 사업·건강검진 사업 등과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금지급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감차와 복지사업의 효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타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해소와 전달체계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정부개입의 방식에 대한 재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3년간 총 7,653억원, 연평균 2,551억원으로 추계하였음.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계	△2,445	△2,550	△2,659	△7,653	△2,551
국세 (74.7%)	△1,826	△1,905	△1,986	△5,717	△1,906
지방소비세 (25.3%)	△619	△645	△673	△1,936	△645

- 한편, 동 특례는 연간 부가가치세 경감규모가 300억원 이상으로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평가가 진행중에 있음. 따라서 일몰연장의 여부는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진단⁴²⁾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바탕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2) 택시업계의 경영현황, 택시수송의 수요·공급 현황,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 등

9.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 ☐ 적용대상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자동차: 대당 70만원 - 전기자동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자동차: 대당 400만원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31년 12월 31일</u>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신설되었고, 2012년에는 전기자동차, 2017년에는 수소자동차가 동 제도에 포함됨.

개별소비세의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경

우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각각 100만원과 4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전기자동차는 도입 당시 200만원이었으나 2018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이후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하였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구 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70만원 (100만원)	300만원 (429만원)	400만원 (527만원)
적용기간	2009. 1. 1. ~ 2026. 12. 31.	2012. 1. 1. ~ 2026. 12. 31.	2017. 1. 1. ~ 2026. 12. 31.

주: 개별소비세액의 30%만큼 교육세 부과, 개별소비세액+교육세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⁴³⁾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 말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현황은 총 329만 4,498대, 전체 승용차 대비 14.9% 수준으로 매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43)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한 흡수 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등을 통한 제거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의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름.(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2.)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 등록 현황(승용차 기준)]

(단위: 대, %)

연도	하이브리드차 (A)	전기차 (B)	수소전기차 (C)	환경친화적 자동차 (A+B+C)		전체 승용차
					비중	
2016	232,996	10,771	87	243,854	1.4	17,338,160
2017	313,578	24,907	170	338,655	1.9	18,034,540
2018	404,759	55,417	891	461,067	2.5	18,676,924
2019	505,711	87,926	5,068	598,705	3.1	19,177,517
2020	674,115	117,616	10,831	802,562	4.0	19,860,955
2021	907,853	185,256	19,270	1,112,379	5.4	20,410,648
2022	1,170,112	303,261	29,337	1,502,710	7.2	20,952,759
2023	1,541,747	411,084	33,591	1,986,422	9.3	21,390,202
2024	2,019,259	528,215	36,194	2,583,668	11.9	21,771,120
2025	2,538,938	713,835	41,725	3,294,498	14.9	22,038,603

주 : 1. 해당 연도 12월 기준

2. 비중은 전체 승용차 대비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임.

3. 하이브리드는 휘발유+전기, 경유+전기, LPG+전기 연료를 포함, 수소전기차는 수소+수소전기 연료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별소비세 감면과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이 없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동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2024년에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⁴⁴⁾에 따르면, 수송

44)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24. 9. p.207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내연기관차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 가지 유형의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 다만, 동 감면제도에 따른 2024년도 감면세액은 하이브리드자동차 2,408억원, 전기자동차 2,057억원, 수소전기차 68억원으로 총 4,533억원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조세지출의 총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하이브리드차	750	1,085	1,470	2,108	2,408	2,913	3,166
전기차	490	700	1,613	1,984	2,057	2,602	2,687
수소전기차	142	167	208	137	68	32	33
계	1,382	1,952	3,291	4,229	4,533	5,547	5,886

주: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임.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한편,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2027년 7,592억원(하이브리드자동차 3,102억원, 전기자동차 4,332억원, 수소전기자동차 153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4조 497억원(연평균 8,099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 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하이브리드자동차	△3,102	△3,155	△3,209	△3,264	△3,320	△16,052	△3,210
전기자동차	△4,332	△4,520	△4,716	△4,921	△5,136	△23,625	△4,725
수소전기자동차	△158	△161	△164	△167	△171	△820	△164
전 체	△7,592	△7,836	△8,090	△8,353	△8,627	△40,497	△8,099

주: 각 자동차별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111조의2) ○ 적용요건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45)} 을 충족하는 자 *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의 합계가 각각 1대인 경우 *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 환급세액 - 휘발유·경유: 250원/ℓ - LPG부탄: 개별소비세 전액 ○ 연간 환급 한도액 -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금액 * 3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3항 ⁴⁶⁾)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31년 12월 31일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김승수의원안 2026. 4. 17. 발의(의안번호 18401),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위 2건의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교통·에너지·환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인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⁴⁷⁾에 따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연료비에 부과되었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임.

동 환급 특례는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5월 1일부터 연간 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하여 시행되었으며, 2017년 4월 10일부터는 20만원으로 상향, 2022년 2월 15일부터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음.

동 특례의 적용기한은 8차례⁴⁸⁾ 연장된 바 있으며,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규정되어 있음.

- 최근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실적으로 보면, 2022년 이후 환급건수는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총 환급액은 2022년 566억원에서 2024년 593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5년 577억원으

47)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48)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1년, 2023년에 각각 연장

로 감소한 상황임. 유종별로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LPG부탄, 경유 순임.

[유종별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환급건수	환급액	환급건수	환급액	환급건수	환급액	환급건수	환급액
휘발유	432,426	54,618	434,432	57,973	428,498	58,124	417,039	56,046
경유	813	88	745	97	728	93	684	81
LPG부탄	20,645	1,928	18,913	1,641	16,923	1,551	15,047	1,576
계	453,884	56,635	454,090	59,711	446,149	59,767	432,770	57,703

자료: 국세청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동 특례 제도는 유류세 인하의 역진성을 보완하면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단일 수 있음.

유류세의 직접적인 인하를 통한 세제 지원은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그 혜택이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량이나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동 특례 제도는 서민경제 활성화 효과가 인정되는 등 조세정책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⁴⁹⁾.

둘째, 경형자동차의 경우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큰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지속적인 시행은 에너지 절약, 도심 주차난 해결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계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 6월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차종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계
소형		204,802	23,000	2,887,516	80,265	3,195,583
중형		13,214,253	468,642	372,878	20,287	14,076,060
대형		6,691,676	94,451	379,247	48,198	7,213,572
경형	일반 (1,000CC 이하)	2,102,968	32,962	51,183	162	2,187,275
	초소형 (250CC 이하)	2,123	-	1,735	11	3,869
계		22,215,822	619,055	3,692,559	148,923	26,676,359

자료: 국토교통부

49) 한국개발연구원(KDI),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2021. 9.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2027년 585억원(휘발유 567억원, 경유 1억원, LPG부탄 17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2,924억원(연평균 585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567	△567	△567	△567	△567	△2,835	△567
	경유	△1	△1	△1	△1	△1	△4	△1
개별소비세	LPG부탄	△17	△17	△17	△17	△17	△85	△17
전체		△585	△585	△585	△585	△585	△2,924	△5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동 개정안은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2031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11.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제111조의3) ☐ 감면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 ※ 개별소비세: 252원/kg 교육세: 37.8/kg(개별소비세의 15%) ☐ 감면률 - 킬로그램당 40원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9년 12월 31일</u> (박용갑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김승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u>2027년 1월 1일</u>

* 박용갑의원안 2026. 3. 12. 발의(의안번호 17431), 김승수의원안 2026. 4. 10. 발의(의안번호 18248),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3건의 개정안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려는 것임.

○ 박용갑의원안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승수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는 택시연료(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된 제도임.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185원/ℓ 을 전액 면제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리터당 23.39원(=킬로그램당 40원)만을 감면하고 나머지는 유가보조금⁵⁰⁾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동 특례의 적용기한은 2012년, 2015년, 2018년에 각각 3년씩, 2021년에 2년, 2023년에는 3년 연장하여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조세지출 실적	516	473	461	438	423	408	421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는 택시연료(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⁵¹⁾를 면제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

50) 유가보조금은 택시·버스·화물차에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급됨. 택시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면세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이에 연동하여 상향조정됨.

51) 교육세는 부가세로 개별소비세액의 15% 부과

제적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된 제도임.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185원/ℓ을 전액 면제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리터당 23.39원(=킬로그램당 40원)만을 감면⁵²⁾하고 나머지는 유가보조금⁵³⁾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동 특례의 적용기한은 2012년, 2015년, 2018년에 각각 3년씩, 2021년에 2년, 2023년에는 3년 연장하여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택시연료용 부탄석유가스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개별소비세	412	401	380	368	355
교육세	62	60	57	55	53
합계	473	461	438	423	408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 등 택시연료인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및 부과금은 리터당 221.36원⁵⁴⁾으로, 세금감면분(23.39원)⁵⁵⁾과

52)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준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유류구매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기납부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 받는 절차

53) 유가보조금은 택시·버스·화물차에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급됨. 택시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면세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이에 연동하여 상향조정됨.

54) 현재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316.25원(개별소비세 275원+교육세 41.25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톤당 62,283원의 수입 판매 부과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 이를 리터로 변환 시 유류세 184.94원, 부과금 36.42원으로 총합 221.36원임.(다만, 유류세는 2023.10.31.까지 한시적 인하 전 정상 탄력세율 기준)

55) 택시용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리터당 23.39원)의 유류세 감면 적용

유가보조금 지원(197.97원)⁵⁶⁾을 감안할 때 택시사업자가 납부하는 유류세는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며, 개정안은 적용기한의 연장을 통해 택시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해당 조항에 대한 “2021년 조세특례 의무 심층평가”에서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택시서비스 제공의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은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단일 수 있음.

둘째,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축소 또는 폐지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택시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관리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요금 인상이 상당히 억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택시 과잉공급 및 연료부담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축소 또는 폐지는 택시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적용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56) 유류세+부과금 합계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액인 리터당 23.39원을 제외하고 전액 유가보조금 지급

□ 국회예산정책처는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380억원 등 3년간 총 1,101억원, 5년 연장할 경우 총 1,772억원으로 추계하였음.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일몰기한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2029년	△380	△367	△354	-	-	△1,101	△367
~2031년	△380	△367	△354	△342	△330	△1,772	△3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